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구 미 시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붙여쓰기 되어있는 제명의 띄어쓰기 및 상위법에 위반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보다 적법하고 알기 쉬운 조례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반영 (안 제1장 : 안 제1조 ~ 안 제34조)

나.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개정 (안 제2장)

-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개정(안 제35조, 제36조)
-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원칙 개정(안 제37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3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구미시 조례 제 호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장 제명 띄어쓰기 정비

제1조(「구미시의회공인조례」의 개정) 구미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의회공인조례”를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

제2조(「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를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3조(「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 개정)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구미시보증채무관리조례」의 개정) 구미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보증채무관리조례”를 “구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개정) 구미시조례규
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구미시 조례·규칙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 개정) 구
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구미시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7조(「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의 개정) 구미오성문화
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를 “구미오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구미

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를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로 한다.

제9조(「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의 개정)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구미시사편찬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0조(「구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구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구미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미시체육진흥협의회”를 “구미시 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

제11조(「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구미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구미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의 개정) 구미시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로 한다.

제13조(「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의 개정) 구미시주민
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구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로 한다.

제14조(「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의 개정) 구미시행정동우
회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를 “구미시 행정동우회 육성 ·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미시행정동우회”를 “구미시 행정동우회”로 한다.

제15조(「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구
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구미시 안전
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을 “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한다.

제16조(「구미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의 개정)

구미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7조(「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구미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구미시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을 “구미시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한다.

제18조(「구미시물품관리조례」의 개정) 구미시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물품관리조례”를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9조(「구미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의 개정)

구미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구미시 인감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한다.

제20조(「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1조(「구미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의 개정) 구미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를 “구미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로 한다.

제22조(「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의 개정)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를 “구미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조(「구미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의 개정) 구미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를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

제24조(「구미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의 개정) 구미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

제25조(「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개정)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로 한다.

제26조(「구미시양수기운용관리조례」의 개정) 구미시양수기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양수기운용관리조례”를 “구미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제27조(「구미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의 개정) 구미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를 “구미시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28조(「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개정) 구미시건강

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한다.

제29조(「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의 개정) 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구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30조(「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의 개정)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구미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31조(「구미시동변영회조례」의 개정) 구미시동변영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동변영회조례”를 “구미시 동변영회 조례”로 한다.

제32조(「구미시리개발위원회조례」의 개정) 구미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리개발위원회조례”를 “구미시 리개발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33조(「구미시명예읍면동장조례」의 개정) 구미시명예읍면동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명예읍면동장조례”를 “구미시 명예읍·면·동장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명예읍면동장”을 각각 “명예읍·면·동장”으로 한다.

제34조(「구미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 개정) 구미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구미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장 상위법령 불부합

제35조(「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7일 이내에”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36조(「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37조(「구미시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1조제1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숲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 등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0조”를 “법 제6조”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계획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제11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 후단 중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을 “시행규칙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를 “제3조의 구미시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12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제2항제2호,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목,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5장 제목,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제19조제3호 및 제26조제2항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으로 한다.

제39조(「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의 개정)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를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원”을 “학습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를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로 하고, “별표 3 중 “구미시평생교육원”을 “구미시평생학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구미시의회공인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의회공인조례</u>	<u>구미시의회 공인 조례</u>

□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u>	<u>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u>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u>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u> --- ----- ----- -----.

□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u>	<u>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u>

□ 구미시보증채무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보증채무관리조례</u>	<u>구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u>

□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u>	<u>구미시 조례·규칙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u>

□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u>	<u>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u>

□ 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u>	<u>구미오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u>

□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 에 관한조례</u>	<u>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구미시물 가대책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 <u>구미시 물 가대책위원회</u> ----- ----- ----- -----.

□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u>	<u>구미시사편찬위원회 조례</u>

□ 구미시체육진흥협회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체육진흥협회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u>구미시체육진흥협회의회</u>(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구미시 체육진흥협회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 <u>구미시 체육진흥협회의회</u>----- ----- -----.

□ 구미시공무원직장협회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공무원직장협회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무원직장협회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u>공무원</u>	<u>구미시 공무원직장협회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u>공무원 직장협회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 ----- -----.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u>공무</u>

<u>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u> 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 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 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u>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u> <u>관한 법률</u>-----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구미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u>	<u>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u>

☐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현행	개정안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 조례	구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구미시 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 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u>	<u>구미시 행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조사함으로써 시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u>구미시행정동우회</u> (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지원 육성 발전시켜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구미시 행정동우회</u> ----- ----- ----- -----.

□ 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 에관한조례</u>	<u>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u>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u>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u> ----- ----- ----- -----.

□ 구미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현행	개정안
구미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 보조금지급조례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 한조례	구미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새 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 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구미시 새 마을이동도서관----- ----- -----.

□ 구미시물품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구미시물품관리조례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 구미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u>	<u>구미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u>

□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 정및운영에관한조례</u>	<u>구미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구미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u>	<u>구미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u>

□ 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 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u>	<u>구미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u>

□ 구미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u>	<u>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u>

□ 구미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u>	<u>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u>

□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u>	<u>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u>

□ 구미시양수기운용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양수기운용관리조례</u>	<u>구미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u>

□ 구미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u>	<u>구미시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u>

□ 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u>	<u>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u>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u> (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u> ----- ----- -----.

□ 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u>	<u>구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u>

☐ 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u>	<u>구미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u>

☐ 구미시동변영회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동변영회조례</u>	<u>구미시 동변영회 조례</u>

☐ 구미시리개발위원회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리개발위원회조례</u>	<u>구미시 리개발위원회 조례</u>

☐ 구미시명예읍면동장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명예읍면동장조례</u>	<u>구미시 명예읍·면·동장 조례</u>

□ 구미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u>	<u>구미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u>

□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 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 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 청은 1회에 한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 조에 따라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사람은 <u>그 결정 등을 통지받 은 날부터 5일 이내에</u>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 ----- ----- ----- ----- 「민원처리에 관한 법 률」 제35조에 따라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u>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수료의 성질상 계기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 ① - ----- ----- <u>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삭제></u>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u>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u>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도시림등”이란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등을 말한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

제2조(정의) -----

-----.

1.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2항 -----

-----.

2. -----

-- 법 제12조제2항 -----

-----.

3. “도시숲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 등을 말한다.

제2장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의 수립 및 시행) ----- 법 제

6조-----

----- 도시숲등 조성

·관리계획-----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도시림등의 관리 위탁) ① 시장은 도시림등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생략)

② (생략)

제1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가로수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신설하

--. ----- 계획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

제8조(도시림등의 관리 위탁) ① -----

-----.

1. (현행과 같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 법 제12조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가로수의 수종 선정, 구비조건, 매워심기, 바뀌심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7조(자료유지)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제17조(자료유지) -----

----. -----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제19조(기능) -----
-----.

1. 구미시 도시숲등 -----

변경에 관한 사항	-----
2. <u>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u> 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 <u>법 제12조제2항 각 호</u>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u>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조례</u>	<u>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u>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교육원</u>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1. ~ 5. (생략)	----- <u>학습원</u> -----
	-----.
	1.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

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 ⑤ 생략

소 관 부 서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입 안 자	과 장	박 영 일
	담 당	김 동 순
	담 당 자	김 효 미 (480-6528)